



의안번호	제 2012 - 22 호
보 고 연 월 일	2012. 10. 26. (제44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I. 제58차 전체 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
5.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4
II. 제59차 전체 회의	12
1. 일시·장소	12
2. 참석자	12
3. 주요 안건	12
4.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2
5.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6
III. 제60차 전체 회의	21
1. 일시·장소	21
2. 참석자	21
3. 주요 안건	21
4.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21
5.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31
6.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38
IV. 향후 일정	45

---

별첨 함석천,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  
조석영, “공갈범죄 양형인자 검토(Ⅰ)”  
주용완, 조석영, “공갈, 조세,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의견”  
최형표,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Ⅰ)”  
주용완, 조석영, “관세범죄 설정 여부 적정성 검토”  
함석천,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  
주용완, 조석영,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Ⅱ)”  
최형표,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Ⅱ)”  
주용완, 조석영,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Ⅱ)”  
최형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주용완, 조석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함석천,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  
주용완, 조석영,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Ⅲ)”  
이주원, “공갈범죄 양형기준 검토 의견”  
최형표, “조세범죄 양형기준 검토(Ⅲ)”  
주용완, 조석영,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검토(Ⅲ)”

---

# I. 제58차 전체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2. 9. 10.(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함석천, 최형표, 주용완, 조석영, 범현, 최진녕, 김혜정, 이수정, 이주원, 이종교, 이진국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공갈범죄,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4.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가. 설정대상 범위

- 형법, 폭처법, 특경법상 공갈을 포함시키자는 데 의견 일치됨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350①,②	공갈	10년 ↓
	§351	상습공갈	1/2 가중
폭처법	§2②	공동공갈	1/2 가중
	§2①3호	상습공갈	3년 ↑
	§2③	누범공갈	3년 ↑
	§3①	특수공갈	3년 ↑
	§3③3호	상습특수공갈	5년 ↑

	§3④	누범특수공갈	5년 ↑
특경법	§3①2호	이득액 5억원~50억원	3년 ↑
	§3①1호	이득액 50억원 ↑	무기, 5년 ↑

## 나. 유형분류

### (1) 분류 원칙

- 이득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상습·누범·특수공갈을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한다는 데 이견 없음

### (2) 주무 전문위원 제시안

#### (가) 일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6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2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2월 - 4년	3년 - 7년
4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7년	4년 - 8년
5	50억 원 이상	3년6월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나)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년6월 - 4년	3년 - 7년	5년 - 9년

### (3) 논의 결과

#### (가) 일반공갈 유형의 금액 분류 방법

- 제1유형을 이득액 '1,0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기본으로 하여 주무 전문위원이 추가로 검토하기로 함
- 양형기초자료조사 결과 이득액 1,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3,000만원 이하 사이에 평균형량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3,000만 원 미만을 최하위 유형으로 하는 것이 적정함

(나)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을 금액을 기준으로 몇 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할지 여부

의견	논거
<p>금액 기준 소유형 분류 불필요 (다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갈과 특경법상 공갈의 경우 이득액에 따른 선고형의 경중이 비교적 뚜렷하나, 상습·누범·특수공갈의 경우에는 이득액에 따른 선고형의 경중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li> <li>○ 특수공갈 등은 폭력성향에 중점을 두고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고,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서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기가 곤란함</li> <li>○ 공갈범죄는 사기범죄와는 법률 체계가 다름. '조직적 사기'는 계획적·조직적인 기업형 사기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이 없는 유형을 양형기준에서 새롭게 만든 것임에 비하여, 특수공갈 등은 행위불법에 주목하여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고, 법정형도 일반공갈에 비하여 매우 높아서 사기범죄와 단순히 비교할 것은 아님</li> <li>○ 소수 의견이 지적하는 금액에 따른 형량의 차이는 양형인자로 반영하면 충분함</li> </ul>
<p>금액 기준 소유형 분류 필요 (주용완, 조석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갈과 동일하게 이득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여야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음</li> <li>○ 재산상 이득액에 의한 선고형 경중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하나, 관련 판결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고, 조직적 사기 범죄 유형에서도 재산상 이득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점을 참고할 필요 있음</li> <li>○ 상습공갈 등도 갈취 액수에 따라 구체적 죄질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선고형량의 차등을 두는 것이 당연함</li> </ul>

#### 다. 양형인자

- 주무 전문위원이 주용완·조석영 전문위원안을 종합하여 추가로 검토하기로 함

### 5.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가.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 (1) 관세범죄 현황

##### (가) 양형기초자료조사결과

- 2006년 ~ 2011년 신고사건이 285건에 불과함

##### (나) 관세범죄 발생빈도

#### 【관세법위반사범 발생·검거 현황(2000~2009년)】

구분	발생건수	전년대비 증감률(%)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00	701	30.2	716	102.1	865
2001	965	37.6	957	99.2	1,239
2002	1,193	23.6	1,201	100.7	1,458
2003	1,117	-6.4	1,109	99.3	1,323
2004	1,315	17.7	1,365	103.8	1,625
2005	1,114	-15.3	1,142	102.5	1,420
2006	1,310	17.6	1,325	101.1	1,530
2007	926	-29.3	943	101.8	1,118
2008	1,127	21.7	1,140	101.2	1,341
<b>2009</b>	<b>700</b>	<b>-37.9</b>	<b>706</b>	<b>100.9</b>	<b>842</b>

(다) 연간 접수 및 처리 현황(2011년 기준) (단위 : 건)

구 분	전체 접수	전체 처리	징역형	벌금형
관세법	400	448	153	233
특가법(관세)	21	21	21	0
합 계	421	469	174	233

※ 조세범죄 연간 접수 및 처리 현황(2011년 기준)

구 분	전체 접수	전체 처리	징역형	벌금형
조세범처벌법	1,414	1,475	847	499
특가법(조세)	168	151	134	4
합 계	1,582	1,626	981	503

(2) 검토 결과 - 제외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함

- 사건발생빈도가 낮고, 형사판결로 종결되는 사건도 적으며, 국민적 관심도도 낮음
- 형사처분으로 종결되는 사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조세범죄와 관세범죄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상이하고, 관련성도 높지 않아서 조세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완결하는 의미에서 관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도 낮음
- FTA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서 관세법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결정할 때도 통상의 조세범죄를 상정한 것으로 판단되

고, 통상 조세범죄라고하면 '내국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관세를 포함한 '국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범죄'를 포함시키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나. 조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 (1) 구성요건과 법정형

#### (가) 포탈범

구 성 요 건		적용법조	법정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행위	기본 유형	법 제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및)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 3억 원 및 정상세액의 30% 이상	제1항, 지방세 기본법 제12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및)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포탈세액 <b>연간</b>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가법 제8조 제1항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 <b>연간</b> 10억 원 이상		
무기·5년 이상 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나) 간접적 탈세범

구 성 요 건		적용법조	법정형
① 면세유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 ·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  ②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	기본 유형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항 ② 법 제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 <b>연간</b>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가법 제8조 제1항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 <b>연간</b> 10억 원 이상		무기·5년 이상 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주세법에 따른 면허 없이 주류, 밀술·술덧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		법 제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 벌금

(다) 조세위해범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구 성 요 건	적용법조	법정형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세금계산서	법 제10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p>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p>			<p>공급가액 또는 매입금액 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p>
<p>세금계산서 발급권리자의 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의 통정에 의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p>		<p>법 제10조 제2항</p>	
<p>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 등의 제출</p> <p>② 알선·중개</p>	<p>기본유형</p>	<p>법 제10조 제3항(①), 제4항 전단(②)</p>	<p>3년 이하 징역 <b>또는(및)</b>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p>
	<p><b>영리 목적 +</b>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p>	<p>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p>	<p>1년 이상 유기징역 <b>및</b>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p>
	<p><b>영리 목적 +</b>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p>	<p>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p>	<p>3년 이상 유기징역 <b>및</b>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p>

○ 기타 조세위해범

구 성 요 건		적용법조	법정형
체납처분 면탈	납세의무자 등의 체납처분 면탈 목적 재산은닉 등 행위	법 제7조 제1항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압수 또는 압류물건 보관자의 은닉 등 행위	법 제7조 제2항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 제2항	
	체납처분 면탈의 방조 등 행위	법 제7조 제3항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 제3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세(지방세) 포탈의 증거인멸 목적의 장부 등의 일정 기한 전 소각 등 행위		법 제8조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의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실신고 방해	세무신고 대리인의 허위신고행위	법 제9조 제1항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의3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조세미납 등의 교사, 선동행위	법 제9조 제2항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의3 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명의대여	조세(지방세) 회피 등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법 제11조 제1항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의4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세(지방세) 회피 등 목적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 허락	법 제11조 제2항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의4 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 · 무단양도 · 위변조 행위		법 제12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위변조 납세증명표지의 소지 · 사용 · 교부 행위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 행위			이하 벌금
원천(특별)징수 의무의 불이행	원천(특별)징수의무의 조세(지방세) 징수의무 불이행	법 제13조 제1항 지방세 기본법 제131조 제1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의무자(특별 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금을 미납한 행위	법 제13조 제2항 지방세 기본법 제131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제공 없는 허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알선 · 중개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총급여 · 총지급액의 20% 이하 벌금

## (2) 검토결과

### (가) 다수 의견 - 이주원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

- 포탈법 - 전체 포함
- 간접적 탈세법
  - 면세유 부정유통, 유사석유제품제조는 포함
  - 무면허주류 제조·판매는 제외
- 조세위해법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전단,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 2호는 포함.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2항은 제외
  - 나머지 조세위해법은 모두 제외

### (나) 소수의견 - 이주원

- 혐의의 포탈범만을 설정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견해
- 간접적 탈세범은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조세위해범은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많으므로 설정대상에서 모두 제외함이 타당

## II. 제59차 전체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2. 10. 8.(월) 15:00 ~ 18:1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함석천, 최형표, 주용완, 조석영, 범현, 최진녕, 강우예, 이주원, 이종교, 이진국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공갈범죄,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4.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가.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1) 분류 원칙

- 이득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상습·누범·특수공갈을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자는 데 이견 없음

##### (2) 주무 전문위원 제시안

###### (가) 일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6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2월 - 4년	3년 - 7년
4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7년	4년 - 8년
5	50억 원 이상	3년6월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나)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년6월 - 4년	3년 - 7년	5년 - 9년

(3) 논의 결과

(가) 일반공갈 유형의 금액 분류 방법

- 소유형분류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 다만, 제4유형의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4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제5유형의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7년에서 8년 이상으로 각 상향하자는 의견(주용완, 조석영)

(나)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을 금액을 기준으로 몇 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할지 여부

의견	논거
금액 기준 소유형 분류 불필요 (최형표, 강우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갈 유형은 행위반가치를 중심으로,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은 결과반가치를 중심으로 소유형을 분류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후자를 다시 이득액으로 나누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음</li> <li>○ 일반공갈과 특경법상 공갈의 경우 이득액에 따른 선고형의 경중이 비교적 뚜렷하나, 상습·누범·특수공갈의 경우에는 이득액에</li> </ul>

	<p>다른 선고형의 경중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공갈 등은 폭력성향에 중점을 두고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고,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서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기가 곤란함</li> <li>○ 공갈범죄는 사기범죄와는 법률 체계가 다름. ‘조직적 사기’는 계획적·조직적인 기업형 사기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이 없는 유형을 양형기준에서 새롭게 만든 것임에 비하여, 특수공갈 등은 행위불법에 주목하여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고, 법정형도 일반공갈에 비하여 매우 높아서 사기범죄와 단순히 비교할 것은 아님</li> <li>○ 아래 의견이 지적하는 금액에 따른 형량의 차이는 양형인자로 반영하면 충분함</li> </ul>
<p>금액 기준 소유형 분류 필요 (주용완, 조석영, 이종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갈과 동일하게 이득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여야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음</li> <li>○ 재산상 이득액에 의한 선고형 경중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하나, 관련 판결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고, 조직적 사기 범죄 유형에서도 재산상 이득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점을 참고할 필요 있음</li> <li>○ 상습공갈 등도 갈취 액수에 따라 구체적 죄질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선고형량의 차등을 두는 것이 당연함</li> </ul>
<p>이득액 5억원 이상은 일반공갈 제4, 5유형 적용 (함석천, 이주원, 법현, 이진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은 원안대로 이득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지 않기로 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공갈의 제4, 5유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기하는 방안</u></li> <li>○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은 원칙적으로 행위태양을 중시하되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재산범죄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공갈 유형으로 가서 특별법에 따른 형량범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함</li> <li>○ 다만, 주무 전문위원이 작성한 양형기준안 중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해야 함</li> </ul>

## 나. 양형인자

### (1)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가) 양형인자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 또는 기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위법사항이나 비리를 공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li> <li>-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단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직무상 권한행사를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li> </ul> </li> </ul>
--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견해의 대립**

의견	논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주용완, 조석영, 이주원, 이진국, 이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갈범죄에서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상당 수 존재하는데,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여 그 시정을 촉구해야 할 사람이 그 직무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오히려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높음</li> <li>○ 이러한 유형은 공갈범죄에 특유하게 나타나는 양형의 요소이므로 엄정한 처벌 필요</li> </ul>
다른 양형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최형표, 범현, 최진녕, 강우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 시민단체 간부 등 신분상의 이유만으로 바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사람의 범행이 상대방의 열악한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다른 양형인자로 포섭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li> </ul>

**(2)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들과의 균형상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임
- 이에 대해서는 폭처법상 2인 이상이 범한 공동공갈은 일반공갈에 비하여 법정형을 1/2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 존재(주용완, 조석영)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소수 의견 제시

- 공갈범죄는 그 성격상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하는 범죄인데 이를 다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재검토 필요(이주원)

#### (4) 기타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양형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주용완, 조석영)
  - ‘소극 가담’에 대응하는 양형인자로 폭력범죄 양형기준에도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 5.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가. 조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 (1) 면세유 부정유통,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

- 제외하자는 의견 - 다수 의견(함석천, 범현, 최진녕, 강우예, 이주원, 이진국, 이종교)
  - 실제 적용사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관념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험한 결과 초래할 우려 있음
  - 기존의 다른 양형기준 설정 원칙과 일관성 유지할 필요 있음
- 주무 전문위원 - 다수 의견에 따라 수정하겠다고 답변

##### (2)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행위

##### (가) 제외하자는 의견 - 다수 의견

-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고, 다른 간접적 탈세범과 달리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 점 고려

- 최근 발생 사례가 거의 없고, 구성 요건에 주류의 포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공소장이나 판결문에도 포탈세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조세범죄와 상이한 성격을 가짐

**(나) 포함시키자는 의견 - 소수 의견(주용완, 조석영)**

-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
- 다만, 다른 간접적 탈세범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행위도 설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유형분류**

**(가) 다수 의견**

- 주무 전문위원 양형기준안에 찬성

**(나) 소수 의견(주용완, 조석영)**

- 간접적 탈세범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면 별도의 형량범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다만, 이 의견도 간접적 탈세범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주무 전문위원이 만든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이견 없음

**다. 형량범위**

**(1) 주무 전문위원 제시안**

(가) 일반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억 원 미만	-8월	2월-10월	6월-1년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월-10월	6월-1년	10월-1년4월
3	5억 원 이상	6월-1년	10월-1년4월	1년-2년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3 유형에 포섭

(나)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3	2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9년	7년-12년

(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10월	4월-1년	6월-1년2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4월-1년	6월-1년2월	1년-1년6월
3	50억 원 이상	6월-1년2월	1년-1년6월	1년2월-2년

(라)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3	300억 원 이상	2년-4년	3년-5년	4년-7년

## (2) 제시된 의견

### (가) 형량범위 상향 의견 - 주용완, 조석영

- “일반 조세포탈”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6월에서 최소 10월 이상으로 상향 필요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6월에서 최소 10월 이상으로 상향 필요

### (나) 주무 전문위원 답변

- 위와 같이 지적된 부분의 경우에는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상한과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이 중첩되는 영역이 넓어 다른 유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정하겠다고 답변

## 라. 양형인자

### (가) 조세범죄에 특유한 양형인자를 추가하자는 의견 - 이종교 위원

- 조세범죄의 경우에는 각 세목별로 전형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형태가 다르므로 각 세목별로 고유한 양형인자를 추가로 발굴하여 배치할 필요 있음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와 대비하여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등을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방안 추가 검토 필요
- 조세포탈의 수법을 세분해서 검토하여 특유한 양형인자 발굴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

**(나) 논의 결과**

- 이종교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하여 주무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완하기로 함

### Ⅲ. 제60차 전체회의

#### 1. 일시·장소

- 일시 : 2012. 10. 22.(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464호 회의실

####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함석천, 최형표, 조석영, 최진녕, 김혜정, 이수정, 이종교, 이진국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공갈범죄,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추가 검토

#### 4.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 가. 양형기준안 수정안 검토 배경

##### (1) 권고 형량범위 상향 관련

- 2012. 10. 4. 개최된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회의 과정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강도강간(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3유형)과 특수강도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3유형)의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형에 비하여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 최초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성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하였으나 지적된 위 유형만이 유일하게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2) 성범죄 양형인자 수정 관련**

-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성상 쉽게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자기가 당하는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피해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범행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나. 권고 형량범위 상향 여부**

**(1)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법정형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검토 결과

-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하자는 데 이견 없음

(가) 강도강간 권고 형량범위 수정 방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u>7년 - 10년</u>	<u>9년 - 13년</u>	<u>12년 - 17년</u>

(나) 특수강도강제추행 권고 형량범위 수정 방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u>6년 - 9년</u>	<u>8년 - 12년</u>	<u>11년 - 15년</u>

다. 성범죄 양형인자 수정 여부

(1) 법률상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취급

구분	형법	성폭법	아청법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 추행	5년↓(302조)	<u>13세 미만 대상</u> 7조⑤(강간, 강제유사 성교, 강제추행에 준해 서 처벌) (10년↑/7년↑/5년↑)	<u>19세 미만 대상</u> 7조⑤(강간, 강제유사 성교, 강제추행에 준해 서 처벌) (5년↑/3년↑/1년↑)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 추행	5년↓(302조)	간음 - 5년↑ (6조⑤) 추행 - 1년↑ (6조⑥) (유사성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음)	
성인 대상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	5년↓, 1,500만원↓ (303조①)		
성인 대상 업무상 위계· 위력 추행		2년↓, 500만원↓(10조 ①)	

## (2)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가)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대상 위계·위력간음 ⇒ 위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됨
- 다른 성인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위계·위력만으로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자가 적용될 여지없음
- 청소년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위계·위력이라고 평가할만한 행위가 있기 어려우므로 위 인자가 적용될 여지없음

### (나) 특별감경인자 삭제 여부 - 삭제하자는 데 의견 일치

-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범행이라고 하여 특별감경인자로까지 반영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많음
- 최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른들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사안에서 대부분 업무상 고용관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단지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움

- 따라서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에서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3)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가)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위계·위력추행, 청소년 위계·위력유사성교 ⇒ 위 특별감경인자 적용
- 다른 성인 대상 강제추행범죄의 경우에는 위계·위력만으로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자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나)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의 경우 - 삭제하자는 데 의견 일치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에는 제2유형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2. 3. 16. 시행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위 인자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할 경우,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의 경우에는 일단 특별감경인자가 1개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어 성인대상 강제추행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청소년 강제추행	9월 - 1년6월	1년3월 - 2년6월	2년 - 3년6월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아청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임

(다) 청소년 위계·위력유사성교 - 삭제하자는 데 의견 일치

■ 양형기준 보완 필요성

- 청소년이나 성인 대상 강제유사성교는 구별 없이 제2유형으로 포섭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양형기준상으로는 성폭법 제7조 제5항에 의한 청소년 위계·위력유사성교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나, 다른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 위계·위력유사성교도 제2유형에 포섭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현행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 있음
- 수정안의 내용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강제유사성교(청소년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는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특별감경인자 삭제 여부

- 청소년 대상 위계·위력간음 유형에서 언급한 논거와 동일한 이유로 청소년 위계·위력유사성교의 경우에도 위 인자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4)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가)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유사성교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장애인(13세 이상 ~ 19세 미만) 대상 위계·위력추행, 위계·위력유사성교, 위계·위력간음 ⇒ 위 특별감경인자 적용
- 장애인 대상 의제추행, 의제간음, 준강제추행, 준강간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위 인자를 적용할 여지없음

#### (나) 장애인 대상 위계·위력추행의 경우 - 삭제하자는 데 의견 일치

- 장애인 위계·위력추행은 제2유형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

로 감경하여 적용하도록 함

- 위 인자를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할 경우, 장애인 대상 위계·위력 추행의 경우에는 일단 특별감경인자가 1개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제1유형인 장애인 대상 의제추행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위계·위력추행	9월 - 1년6월	1년3월 - 2년6월	2년 - 3년

- 이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음
- 따라서 장애인 대상 위계·위력추행의 경우에는 위 인자를 특별감경인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다) 장애인 대상 위계·위력간음, 위계·위력유사성교의 경우**

-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의견	논거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자는 의견 (다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계·위력만으로 족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만 있었다고 하여 특별감경을 하여 주는 것은 성폭법의 취지나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음</li> <li>○ 성인 대상 강제유사성교의 경우에도 일반강제추행과 법정형은 동일하나 행위불법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이 훨씬 중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한 예와 같이 법정형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권고형</li> </ul>

	량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자는 의견 (김혜정)	○ 13세 이상의 장애인인 경우 성폭법상 위계·위력간음과 위계·위력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을 낮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은 동의하나, 위계·위력간음과 위계·위력유사성교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5)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가)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13세 미만 대상 위계·위력추행, 위계·위력유사성교, 위계·위력간음 ⇒ 위 특별감경인자 적용

#### (나) 특별감경인자 삭제 여부 - 삭제하자는 데 의견 일치

-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성상 폭행·협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조차 못한 채 성폭력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여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형량범위를 낮게 적용하는 것

은 성폭법의 입법취지나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음

- 성폭법 제7조 제5항은 강제추행, 강간과 위계·위력간음, 위계·위력추행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살펴보더라도 위계·위력에 의한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단순 강간, 강제추행, 강제유사성교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5.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가. 유형분류 및 권고형량범위 관련 논의 결과

#### (1) 다수 의견

##### (가) 양형기준안의 내용

#### 01. 일반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6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2월 - 4년	3년 - 7년
4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일반공갈의 4 유형 또는 5유형에 해당할 경우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와 일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형량범위에 의한다.

#### 0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나) 내 용

- 이득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상습·누범·특수공갈을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류
- 폭처법, 특경법상 공갈은 이득액 기준 유형에 포섭
- 특경법상 공갈 유형과 폭처법상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그 처리를 위해 일반공갈 유형에 단서 부기안(※ 표시부분)을 두어 권고형량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 재산범죄로서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자유침해범죄로서는 행위의 성격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으로, 재산범죄와 자유침해범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그에 따라 폭처법과 특경법의 특별가중구성요건이 적용되는 유일한 범죄인 공갈범죄의 이중적 속성을 적절하게 반영함
- 이득액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기죄의 소유형 분류방안을 따르되, 공갈죄는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상당하고, 통계상 이득액 3,000만원 미만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7.4%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1억원 미만에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소유형을 따로 분류함
- 공갈범죄의 불법의 정도가 이득액(또는 피해액)과 상당한 관련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득액이 올라갈수록 물리적인 폭행, 협박의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득액이 수억 원대로 올라가는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수 나타나는 반면, 상습·누

범·특수공갈 유형은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이와 같이 상습·누범·특수공갈범죄와 이득액과의 정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을 이득액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일반공갈범죄에 부기안을 마련함이 타당함

- 특정법과 폭처법이 경합하는 경우를 상정해 소수 의견과 같이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및 50억원 이상의 소유형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가능함. 그러나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은 여태까지 1건만 찾아볼 수 있었고(서울중앙지법 2010고합56), 앞으로도 유사한 유형의 범죄가 빈발하리라고 보기는 곤란함
- 과거 사례가 없거나 장차 발생할 개연성도 거의 없는 범죄 유형에 대해 추상적으로 권고형량범위를 나누어 소유형을 분류한 적은 없었음(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해 사례가 없었던 국외침해를 소유형으로 분류했던 것은 장차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처벌의지에 대한 규범적 고찰을 한 결과였지만, 상습·누범·특수공갈 범죄에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특정법상 공갈 유형과 폭처법상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그 처리를 위해 별도로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사례가 존재하였던 권고형량범위에 포섭되도록 단서를 마련하는 것이 과거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도 타당함(선거범죄에서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등 위반죄의 경우 참조)

(2) 소수 의견 (주용완, 조석영 위원)

(가) 양형기준안의 내용

01. 일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6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	3년 - 6년
4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5	50억 원 이상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0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50억원 이상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03.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원 미만	2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2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3	50억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 14년

(나) 내 용

- 다수 의견과 같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상습·누범·특수공갈 및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을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류
- 다만 특정법 공갈의 구성요건을 상습·누범·특수공갈에 반영해 금액별로 구분
- 다수 의견은 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의 법정형(3년 이상)과 상습, 누범, 특수공갈의 법정형(5년 이상) 및 행위반가치가 서로 다르더라도,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공갈 액수에서는 함께 평가한다는 문제점 존재

## 나. 양형인자 관련

### (1) 주무 전문위원 제시안

#### (가) 일반공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 자/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견해 있음)</li>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li>○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li> <li>○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li> <li>○ 계획적인 범행</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ul>
	행위 자/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공갈 · 누범공갈 · 특수공갈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 자/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견해 있음)</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li>○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li> <li>○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인 범행</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ul>
	행위 자/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ul>

(2)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경우

(가) 양형인자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
  - 기자 등 언론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피해자의 위법 사항이나 비리를 공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시민단체 등 사회적 영향을 가진 단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직무상 권한행사를 빙자해서 공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양형인자 설정 필요성

- 다른 범죄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임
- 공갈범죄에서는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상당수 나타남
-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공갈에 특유하게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액도 상당한 편임
-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캐내어 그 시정을 촉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자,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그 활동으로 얻은 정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오히려 범행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정의 필요성도 상당함

(다) 논의 결과

의견	논거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다수 의견)	○ 공무원, 기자, 시민단체 등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로 인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경우 청렴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런 지위를 망각한 채 그 활동으로 얻은 정보 또는 사칭한 지위를 바탕으로 범행에 이용하는 행태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정의 필요성도 상당함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최진병, 함석천)	○ 직업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범죄는 피해자에게 악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반드시 행위자의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에서 비롯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직업 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사례는 공갈범죄의 전형적인 사안으로서 이 요소를 특별가중요소로 삼을 경우 상당수 공갈범죄가 가중영역에서 형량범위를 권고하게 됨

## 6. 조세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가. 권고 형량범위 관련

#### (1) 다수 의견 - 주무 전문위원 제시안

##### (가) 일반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억 원 미만	-8월	4월-10월	8월-1년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월-10월	6월-1년	10월-1년6월
3	5억 원 이상	6월-1년	10월-1년6월	1년-2년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3 유형에 포섭

##### (나)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3	2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9년	7년-12년

(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10월	4월-1년	10월-1년2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4월-1년	8월-1년2월	1년-1년6월
3	50억 원 이상	8월-1년2월	1년-1년6월	1년2월-2년

(라)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3	300억 원 이상	2년-4년	3년-5년	4년-7년

(2) 소수 의견 - 주용완, 조석영

(가) 일반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억 원 미만	-8월	6월-1년	9월-1년3월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1년	9월-1년3월	1년-2년
3	5억 원 이상	9월-1년3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나)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4년6월	4년-6년	5년-8년
3	2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다)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8월	6월-1년	9월-1년3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3월	1년-2년
3	50억 원 이상	8월-1년3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라) 특가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6월	1년-2년	2년-4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3	300억 원 이상	2년6월-4년6월	4년-6년	5년-8년

나. 양형인자 관련 논의 결과

(1) 주무 전문위원 제시안

(가) 일반 조세포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 조직적 범행</li> <li>○ 2년 이상의 계속적 · 반복적 범행</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li> <li>○ 자수 ·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li> <li>○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상습범인 경우</li> <li>○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의 중개 · 알선 · 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li> <li>○ 포탈한 세액 중 상당 부분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li> <li>○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	---

(나) 특가법상 조세포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 조직적 범행</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li> <li>○ 자수 ·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li> <li>○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세무공무원의 범행</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li> <li>○ 포탈한 세액 중 상당 부분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li> <li>○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li>○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의 중개 · 알선 · 교사행위</li> </ul>

(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조직적 범행</li> <li>○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li> <li>○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li> <li>○ 세무 관행을 소극적으로 추종한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ul>

(라)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조직적 범행</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세무공무원의 범행</li> </ul>

	자/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방양형인자	행위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세무 관행을 소극적으로 추종한 경우 ○ 소극 가담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중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 (2) 논의 결과

- 아래에 제시된 소수 의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무 전문위원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음
-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 있어서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범행가담”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주용완, 조석영)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과 “포탈한 세액 중 상당 부분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사이에 “상당부분” 정의가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로 표현을 달리 하여 ① “포탈한 세액 중 상당 부분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를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하거나, ② 양형인자 자체의 표현에 비율을 적시하여 “포탈한 조세를 약 2/3 이상 납부한 경우 등”, “포탈한 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

상되는 경우”로 수정하자는 의견(주용완, 조석영)

- 조세포탈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인 “상습범인 경우”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에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의견(주용완, 조석영)
- 그 밖에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고액채납자”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의견(주용완, 조석영)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참작하여 전체 세액 중 포탈세액이 차지하는 비율(포탈률)을 양형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이중교)

#### **IV. 향후 일정**

- 양형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다음 전문위원 전체회의 일정을 정하기로 함